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1143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대행

3. D

변 론 종 결 2022. 4. 14.(피고 B, D에 대하여) 2022. 5. 12.(피고 C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3,01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② 피고 D는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전체) 소송비용은, 피고 B, D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3,010만원, ② 피고 C은 1,990만원(☞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금), ③ 피고 D는 2,0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해당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중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나.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 (원고가 2019. 1. 17. 피고 C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1,99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가 송금한 돈이 부당하게 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이를 자진하여 반환치 않아,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이 소에 이른 것”, 또는 “민법의 영역에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피고(☞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 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과, (피고 C에 대한)

불기소처분서에서도 나와 있듯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자신의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입 · 출금하는 형태로 거짓 실적을 만들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통모 또는 이를 방조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는 것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결국 피고 C은 보이스피싱

이 아니라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는 거짓 실적으로 만들어진 신용도로 대출업체를 속이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피고 C이 단순한 피해자 아닌 것입니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도 부당이득금의 반환 또는 원고가 입은 손해금의 배상을 각각 구한다.

나. 그러나 ① 을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지체 없이 인출한 다음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누군가에게 그 돈을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3886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 C이 ‘고의로’ 원고를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무릇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거래 내용은 다양하므

로,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에 대하여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체적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과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57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범죄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자신의 통장으로 잠시 입금되었다가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한 돈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장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원고로부터 돈을 한번 송금받은 직후 범죄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다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검찰에서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피고 C에게 그런 비정상적 금전거래를 하면서 앞뒤 사정을 신중하게 헤아리지 않은 채 상대방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경솔함을 넘어 그런 부주의에 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범죄자의 어떤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선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여전히 부족하므로, 피고 C에게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선불리 지우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각의 부당이득금으로, ① 피고 B은 3,01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1.(☞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② 피고 D는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26.(☞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D에게 공시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각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별지